

예산총칙

2013년도 추가경정 제3회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67,344,753	38,020,343
일반회계		936,741,566	28,102,247
특별회계		330,603,187	9,918,096
공기업특별회계		166,726,132	5,001,784
상수도사업		93,230,865	2,796,926
하수도사업		73,495,267	2,204,858
기타특별회계		163,877,055	4,916,312
공유재산관리		47,762,859	1,432,886
의료급여기금		4,744,934	142,34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697,004	50,9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579,252	17,378
교통사업		37,884,042	1,136,521
도시철도건설사업		31,013,799	930,414
도시재정비촉진		16,883,438	506,503
도시개발		23,311,727	699,352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87,55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6,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